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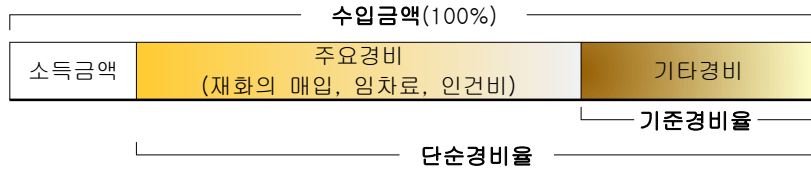
경비율 적용방법 안내

1 경비율제도 의의

-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(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)하여야 하고 기장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
-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다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
-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 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

2 경비율의 이해

-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



-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

3 경비율 적용

-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(영143③ ④)
- 다만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(의사,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)는 신규여부,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

-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(영143 ⑦)

업종별	계속사업자 (직전연도기준)	신규사업자 (해당연도기준)
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	6천만원 미만	3억원 미만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3천6백만원 미만	1억5천만원 미만
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	2천4백만원	7천5백만원 미만

- 추계결정(경정)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(조특법§128조①)
- 결정(경정)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§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§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

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

-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,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.(영143 ⑥, 영208 ⑦)

$$\text{주업종 수입금액} + \text{주업종의 수입금액} \times \frac{\text{주업종 기준금액}}{\text{주업종의 기준금액}}$$

* 주업종 :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

-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(영208 ⑤ 2호, 영143 ④ 2호)
-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,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(영144 ③)
-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

-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
-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
-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즉,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의무를 적용하며(법87 ③),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(통칙70-0·2 ③)
-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소득·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(서면1팀-707, 2006.5.30).
단,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

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

- ‘보험설계사, 음료배달원, 방문판매사업자’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(소법 §73①4, 소령 §137①),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(소법 §144의2 ①, 소령 §201의11④, 소칙 §94의2).

$$\text{연말정산소득금액} = \text{총수입금액} * \text{소득율}(1 - \quad)$$

구 분	업종코드	단순경비율		소득율(1-단순경비율)	
		4천만원이하분	4천만원초과분	4천만원이하분	4천만원초과분
보험모집인	940906	77.6%	68.6%	22.4%	31.4%
방문판매원	940908	75.0%	65.0%	25.0%	35.0%
음료품배달원	940907	80.0%	72.0%	20.0%	28.0%

- 결국 타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고 무기장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나, 보험설계사 등은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어 타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

구분 \ 수입금액 규모	24백만원 미만	75백만원 미만	75백만원 이상
① 보험설계사 등 3개업종	단순경비율	단순경비율	기준경비율
② ‘1’외 인적용역사업자	단순경비율	기준경비율	기준경비율

- 또한,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(소령 §201의11⑩), 이 규정 역시 타 인적용역사업자들보다 유리한 규정

6 단순경비율 적용

-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

구 분	추계 소득금액 계산
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	수입금액 - (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
-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
-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%를 가산함
(장애인단순경비율 = 단순경비율 + (100% - 단순경비율) × 20%)

* 적용례
 단순경비율이 90.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.2임
 $90.3 + (100 - 90.3) \times 20\% = 92.2$

- 인적용역 제공사업자(업종코드 94)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

* 적용례
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(940908)의 경우
 $\{40,000\text{천원} - (40,000\text{천원} \times 75.0\%)\} + \{5,000\text{천원} - (5,000\text{천원} \times 65.0\%)\} = 11,750\text{천원}$

7 기준경비율 적용

-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(재화매입비용, 인건비, 사업장임차료)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(계산서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)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

-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

구 분	추계 소득금액 계산
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	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) ※ 주요경비 = 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

-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

-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

-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/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(영143 ③ 1호 다목 단서)

* 적용례

건축사업(코드 742105) 운영업자의 2019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19년 기준경비율 19.5%의 1/2인 9,750,000원임.

-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, 조특§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

- 결정(경정)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§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§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

-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

-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*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 (규칙 제67조)

추계소득금액 계산(①, ② 중 적은금액)

① 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)

② {수입금액 × (1-단순경비율)} × 배율

귀속 기장의무	2007	2008	2009	2010- 2015	2016- 2019
간편장부대상자	2.0배	2.1배	2.2배	2.4배	2.6배
복식부기의무자	2.4배	2.6배	2.8배	3.0배	3.2배

【문】 제조업(단일업종)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8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, 2019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?

(장재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: 20%, 단순경비율 : 75%, 배율 3.0배)

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,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.

• 주요경비 내용 : 매입비용(41백만원), 임차료(12백만원), 인건비(15백만원)

【답】 40,000,000원

【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】

- 직전연도(2018년도)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,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/2를 적용하며, 배율은 3.2배를 적용한다.

• 추계소득금액 (①, ② 중 적은 금액) : **40,000,000원**

① 120,000,000 - 68,000,000 - (120,000,000 × 20% × 1/2) = 40,000,000

② {120,000,000 - (120,000,000 × 75%)} × 3.2 = 96,000,000

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

-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· 업태별 · 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

-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.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.3을 차감하여 적용함(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)

-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=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+ 0.4
- * 계산례
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.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.0임 (11.6 + 0.4 = 12.0)
-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=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- 0.3 ~
- * 계산례
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.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.0임 (90.3 - 0.3 = 90.0)

*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.

*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음

농업·임업 및 어업(011000~052200), 광업(101000~143107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
공급업(401000~403000)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410000~410001), 건설업
(451101~453000), 도매 및 소매업(522099, 523132, 525200), 운수 및 창고업(601000~621
001, 630301~630302, 630305~630501, 630701~630909, 641201, 749906), 금융 및 보험업
(659201~659900, 659902~672001, 749904), 부동산업(701101~701504, 703011~703024, 92
1404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30000~730008, 741108, 749941), 사업시설 관리,
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143200, 630304, 701600, 712100~713006, 749934, 930903),
인적용역(940100~940919), 기타 개인서비스(701700, 950000), 가구 내 고용활동(950001)

-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. 즉,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

9 주요경비

○ 매입비용

-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(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)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
-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(상품·제품·원료·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)과 동력·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
-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·건설·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
-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·해상·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

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

※ 참고사항

1. 상품, 제품,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**매입부대비용**(운반비, 상하차비, 공과금, 보험료 등)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
2. 원재료 **매입 관세**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, **환급 관세**는 매입비용에서 차감
3. 원재료 등의 **의제매입세액 공제액**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
4.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

-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,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

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

- ① 음식료 및 숙박료
- ② 참고료(보관료), 통신비
- ③ 보험료, 수수료, 광고선전비(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)
- ④ 수선비(수선·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)
- ⑤ 사업서비스, 교육서비스, 개인서비스,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(용역)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
-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(서면1팀-1059, 2005.9.6)

○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

-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
- 리스료(금융리스, 운용리스)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(서면1팀-960, 2007.7.6)
-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.(소득세과-1405, 2009.09.11)
-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「매입비용·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」(국세청고시 제2015-9호)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. (소득세과-154, 2016.01.29.)

○ 인건비

- 종업원의 급여,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,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

※ 참고사항

1.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금·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(비과세분 포함)
2.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,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
3.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(인건비)에 포함되지 않음(서면1팀-88, 2007.1.15)

○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

-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
-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
-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(단순율-기준율)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

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

=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× (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-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)

10 주요경비의 증명(영143 ㉔)

○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빙서류

-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(현금영수증 포함)등 정규증빙서류
-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
-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
-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
 -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
 -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

○ 종업원의 급여·임금·퇴직급여의 증빙서류

- 급여·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
-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
-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

○ 증빙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(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) [별지 제40호 서식(1) 제25쪽] 작성시 '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'란에 기재하여야 함.

성 방법

※ ①~④ ⇒ ②~⑦ ⇒ ⑩~⑫의 순서로 작성한다.

가. 소득금액 계산 (인적사항 등) : ① ~ ⑩

① 소득구분코드

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“30”,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“40”

② 일련번호

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는다.

④ 과세기간

9쪽 ㉞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의 ⑩, ⑫ 과세기간

⑦ 임대/종목·⑧업종코드·⑨총수입금액

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적은 후, “계()”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는다.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“계”항목에 작성한다.

나.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(소득구분별·사업장별) : ⑫ ~ ⑭

○ 지출내용에 따른 분류

구 분	작성 방법
매입비용⑫	재화(상품·제품·원료·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·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)의 매입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
임 차 료⑬	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
인 건 비⑭, ⑮	⑭:급여·임금·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⑮: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·보관하고 있는 금액

○ 증빙자료에 따른 분류(매입비용과 임차료)

구 분	작성 방법
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⑯-⑰	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금액
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⑱-⑳	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
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㉑-㉒	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 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

다. 소득금액 계산(기준소득금액 등) : ㉓ ~ ㉕

추계소득금액	계산방법
“가” 또는 “나” 방법으로 계산 (선택적용 가능)	가. 기준소득금액계산에 의한 방법 총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총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) 나.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방법 [총수입금액 - (총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] × 배율 ^{주1}

주1> 간편장부대상자 : 2.6배, 복식부기의무자 : 3.2배

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·⑪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.

⑩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나.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(소득구분별·사업장별)상의 ⑭란의 금액을 적는다.

⑭ 업종별 기준경비율(%)을, ⑮업종별 단순경비율(%)을 적는다.

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/2를 적용한다.

⑮ (1- ⑮란의 단순경비율)을 뺀 비율에 ⑩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는다.

⑰ ⑮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.6배,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3.2배를 곱한 금액을 적는다.

⑲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는다.

※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,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·제외금액 등은 국세청 고시 제2018-8호(2018.4.13) “매입 비용·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고시”를 참고